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내  
가맹본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I.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사업주 등의 책임강화

### 법 적용 대상 확대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중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업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 대표이사의 의무 ('21.1.1 시행)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대상**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①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②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체계·인원 및 역할 ④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 발주자 의무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신설**

- ① **계획단계**: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②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 ③ **시공단계**: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 도급 관련 개정사항

### 도급 관련 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화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 확대

## 종전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② 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 분야 공사의 전부 도급으로 한정하였으며, ③ 수급인의 근로자가 화재, 폭발 등 산재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작업 시 산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개정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2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 진흥법)를 둔 것으로 봄

- » 대상 ▶ 상시근로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가 **100명\* 이상인** 사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는 50명
- » 업무 ▶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③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함

### 정보 제공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등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시정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 도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적격수급인 선정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함

##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 내용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시 「(중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규정을 신설
- »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규정을 신설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

개정법에서는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하며,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⑨대리운전기사



#### 안전보건 조치·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직종별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b>2시간 이상</b>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b>16시간 이상</b>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 등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교육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교육 가능</li> <li>•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li> </ul>	

» **벌칙**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신설

내용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였음

산재예방 조치 의무 있는 가맹본부 업종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상

- »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  
(중분류 :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치킨, 피자, 커피, 주점 등)
- » 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업종  
(예시 : CU, 이마트24, GS25 등)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조치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 ①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활동 계획
- ②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지원 체계
- ③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 ④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조치사항



②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벌칙

가맹본부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II.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고
-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전부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 한편 **작업중지 해제** 시에는 중대재해 발생 해당작업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해제 심의위원회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에 개최·심의하도록 함

### ●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의무화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법률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사항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 중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 »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 게시하도록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 사업주의 작업승인을 생략할 수 있음

###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 작업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경우 건강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측정·검진**이 필요한 유해인자에 2종(인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추가 지정하였음

###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강화

- 그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 개정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하였으며
  -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을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

### III. 가맹점 주요 재해사례



업종

주요 재해사례



비알콜  
음료점업  
(커피 등)

'16.01.11.

접시를 세척하고 닦던 중 깨진  
접시 모퉁이에 손을 베임



'16.02.09.

카페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반죽기에 넣던 중  
좌측 손이 함께 빨려 들어가 손  
끼임



'16.03.24.

포트에 담겨져 있던 긴 스푼 끝이  
소매에 걸려 포트가 넘어지며  
뜨거운 물이 팔에 쏟아져 화상을  
입음



'16.04.07.

높은 선반에 있던 물건을  
꺼내려다 밟고 있던 지지대  
(플라스틱 음료박스)가 무너져  
떨어짐



업종

주요 재해사례



체인화  
편의점

'16.03.16.

편의점 청소를 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옮기던 중 물통을 넘어뜨려 오른손에 화상을 입음



'16.04.30.

물건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편의점 밖으로 옮기던 중 편의점 입구에 있던 디딤돌에 걸려 넘어짐



'16.08.12.

입고된 물건을 진열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해 커터칼로 박스를 개봉하다 손을 베임



'16.09.29.

편의점 창고에서 선반 위를 정리 하기 위해 의자를 밟고 작업하다 내려오던 중 의자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떨어짐



업종

주요 재해사례



치킨  
전문점

'16.02.26.

채소절단기(파채전용)의 전원 코드를 뽑지 않은 채 청소하다 옆에 있던 물건이 넘어지면서 전원스위치를 건드려 손가락이 끼여 절단됨



'16.06.22.

밤 10시경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사람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짐



'16.07.21.

닭을 튀기던 중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음



'16.11.26.

새벽 1시경 가게 홀에서 주방으로 이동 중 바닥에 있던 물기(살짝 언 상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 Ⅳ.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발생 시 조치

상황	조치
산재로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발생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산재 발생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보존*

\*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보존 또는 요청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대체 가능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	선임 기준	역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li> <li>• 기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li> </ul>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명 이상</li> </ul>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li> </ul>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어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시근로자 50명~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li> </ul>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어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직원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li> <li>•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li> </ul>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

## 고용노동부 연락처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고용노동부 본부	1350	의정부지청	031-850-764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72	고양지청	031-931-2864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경기지청	031-259-0265
서울동부지청	02-2142-8872	성남지청	031-788-1571
서울서부지청	02-2077-6171	안양지청	031-463-7351
서울남부지청	02-2639-2271	안산지청	031-412-1974
서울북부지청	02-950-9831	평택지청	031-646-1182
서울관악지청	02-3282-9092	강원지청	033-269-358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480	강릉지청	033-650-2525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원주지청	033-769-0823
부산북부지청	051-309-1552	태백지청	033-552-8603
창원지청	055-239-6580	영월출장소	033-371-6240
울산지청	052-228-188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31
양산지청	055-370-0935	전주지청	063-240-3399
진주지청	055-752-1752	익산지청	063-839-0031
통영지청	055-650-1949	군산지청	063-450-05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60	목포지청	061-280-0100
대구서부지청	053-605-9150	여수지청	061-650-0137
포항지청	054-271-68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6100
구미지청	054-450-355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7
영주지청	054-639-1155	청주지청	043-299-1314
안동지청	054-851-8037	천안지청	041-560-2874
충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419	충주지청	043-840-4032
인천북부지청	032-540-7980	보령지청	041-930-6142
부천시청	032-714-8788	서산출장소	041-661-5630

※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 1644-4544

